

[일련번호 : 19]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정도 결정 통보 지연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등에 따라 장애정도 결정 통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2장 장애인등록제도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전산 송신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하고, 이후 공단에서 통보된 장애심사 결정내용을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 후 공문에 장애인 정도 결정서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2022년 ~ 2024년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등록 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총 8건의 '장애정도 결정서'를 최대

28일까지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다.

[표] 장애인 결정 통보 지연 내역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장애정도 결정일자	통보일자	부적정 내역
1			220831	220926	24일 지연 통지
2			220902	220926	22일 지연 통지
3			220907	220926	17일 지연 통지
4			220915	220926	9일 지연 통지
5			220928	221014	14일 지연 통지
6			221216	230104	17일 지연 통지
7			221216	230104	17일 지연 통지
8			240109	240208	28일 지연 통지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장애정도 결정 통보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